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30 선고 2021가단3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해영, 이고은, 김시은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판매하는 인터넷과 티비 결합상품인 F를 위탁영업하는 자이다.
- 2) 원고는 피고 B과, 위 피고가 자신의 고객들(주로 병원이나 요양원임)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F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주면 원고는 위 피고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되, 가입고객들이 1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가입계약이 해지되면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3) 피고 B의 알선으로 2020. 8. 21. 전남 광양시 소재 G병원, 2020. 10. 28. 경남 진주시 소재 H 노인요양센터, 2020. 11. 3. 경기도 오산시 소재 I의료재단이 F 상품에 가입하였다(이하 위 상품에 가입한 3곳을 'G병원 등' 이라 한다).
- 4) 원고는 E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인 74,000,000원을 2020. 9. 22.부터 2020. 10. 30.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G병원 등에 대한 영업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 5)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을 G병원 등에 지급하지 않았고, G병원 등은 이를 이유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가입계약은 모두 해지되었다.
- 6) E는 G병원 등이 상품가입계약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영업지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을 가입고객인 G병원 등에 지급하지 않았고, G병원 등은 이를 이유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입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영업지원금 전액을 G병원에 지급하였으니 횡령이나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G병원을 운영하는 K에게 2020. 8. 13. 40,000,000원, 2020. 8. 21. 3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영업지원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K에게 이체된 것으로, 위 돈이 F 상품가입 관련하여 위 병원에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G병원 등 가입고객 3곳에 대한 영업지원금으로 74,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 B이 유독 G병원에만 영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돈을 전액 지급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별도로 지급약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